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680

발의연월일: 2025. 1. 21.

발 의 자: 박성준·김문수·허 영

박용갑 • 정을호 • 허종식

박상혁 • 한민수 • 백혜련

유준병 • 노종면 • 이훈기

윤종군 · 박희승 · 전현희

신영대 · 박홍배 · 박홍근

염태영・박 정・문진석

정성호 의원(2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 중 같은 법 제14조의 '위증 등의 죄'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이하 "수사처"라 함)의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음.

그와 관련하여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 '불출석 등의 죄'나 제13조의 '국회모욕의 죄'역시 그 범죄의 수사에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역시 수사 가의 수사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「국회에서의 증언・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 '불출석

등의 죄'와 제13조의 '국회모욕의 죄'역시 수사처의 수사대상으로 하여 그 수사의 중립성을 기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3호사목 및 제2조제4호다목).

법률 제 호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사목 및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"제14조제1항"을 각각 "제12조, 제13조 및 제14조제1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범한 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		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	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		
3. "고위공직자범죄"란 고위공	3		
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			
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			
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		
죄를 말한다. 다만, 가족의 경			
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			
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			
다.			
가. ~ 바. (생 략)	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		
사.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	사		
등에 관한 법률」 <u>제14조</u>	<u>제12조,</u>		
<u>제1항</u> 의 죄	제13조 및 제14조제1항		
아. (생 략)	아. (현행과 같음)		
4. "관련범죄"란 다음 각 목의	4	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			
말한다.			
가.・나. (생 략)	가.・나. (현행과 같음)		
다.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	다		
「형법」 제151조제1항,			
제152조, 제154조부터 제1			

56조까지의 죄 및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의 의 죄라. (생략)